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6. 28 선고 2024가단5427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93,585,171원 및 이에 대한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C(주)와 원고는 2020. 2. 19. 원고가 C(주)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주)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C(주)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2020. 2. 19.부터 2021. 2. 18.까지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자동 연장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1. 2. 19. 및 2022. 2. 19.에 각 자동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22. 8. 13.부터 2022. 9. 23.까지 사이에 공급한 철강재 대금 중 313,752,828원을 C(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22. 12.경부터 2023. 1.경까지 사이에 C(주)의 원도급업체인 D(주)로부터 위 미수령 물품대금 중 188,251,697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C(주)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H(중복) 사건에서 위 미수령 물품대금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2024. 1. 9. 경매법원으로부터 31,915,960원을 배당받았다.

사. C(주)는 현재 자력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주)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금 93,585,171원(= 313,752,828원 - 188,251,697원 - 31,91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585,1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지체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